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가. 발 의 자 : 이광성 의원 외 12명

나. 의안번호 : 제1231호

다. 발의일자 : 2019. 12. 18

라. 회부일자 : 2020. 1. 13

2. 제 안 사 유

- 이사정산은 수도사용자 등이 이사 등으로 변동될 경우 전 사용자가 사용한 요금을 안내해주는 민원서비스로 현재 요금관리시스템에서 이사 당일 즉시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 “취득일 10일전에 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전 사용자가 사용한 요금을 분리하여 고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규정대로 업무처리 시 오히려 민원이 발생되고 있음.

이사에 따른 수도요금은 이사 당일까지의 수도계량기 지침으로 정산을 해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고 현재 요금관리시스템으로 즉시 처리가 가능함에 따라 “취득일 10일 전에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전 신고 조항”을 폐지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 가. 수도사용자 등이 변동될 경우 “취득일 10일 전에 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만 요금을 분리하여 고지할 수 있는 것을 “이사 당일” 즉시 요금을 분리 고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2항)

4. 참 고 사 항

- 가. 관련 법령 :
- 나. 예산 조치 : 해당 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5. 검토 의견

가. 개요

- 본 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요금관리시스템 고도화에 따라 이사 당일에도 이사정산(분리고지) 신청을 즉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사전신고 조항을 폐지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수도요금의 정산은 건물 또는 토지의 매매 등으로 인해 수도사용자 등이 변경되는 경우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 수도사용자는 수도요금을 정산하고 신규 수도사용자가 승계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제30조제1항).

다만, 신규 수도사용자가 기존 수도사용자의 수도요금을 분리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취득일 10일 전에 시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제30조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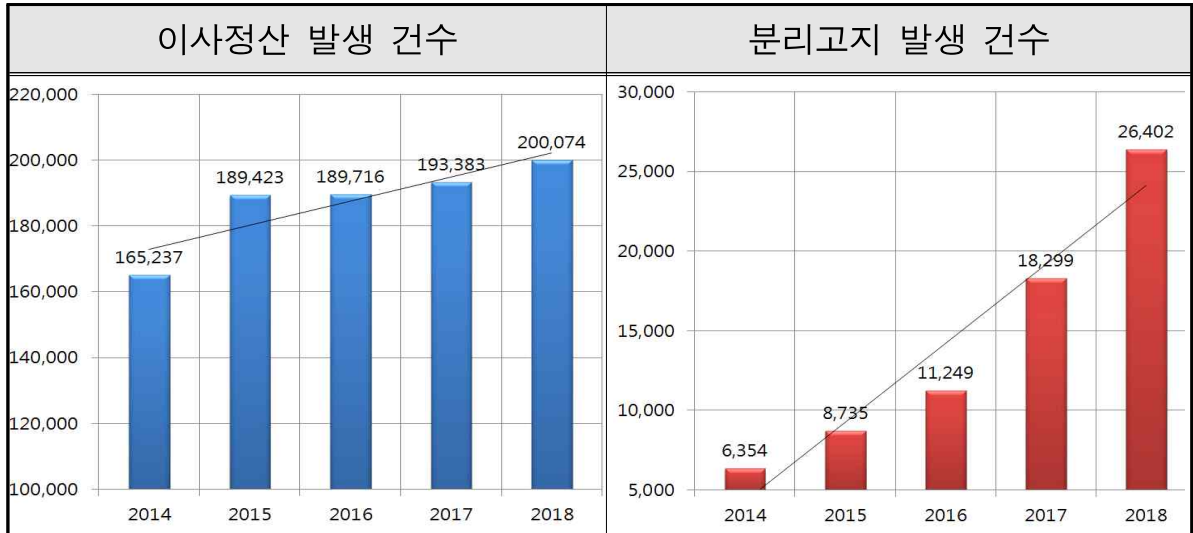
- 이사정산은 이사 등으로 인해 수도사용자 등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수도사용자에게 사용한 요금을 안내¹⁾해 주는 민원서비스로 처리의 신속성이 요구되는 업무임.

이사정산 관련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로 2018년 기준 전체 발생 민원의 2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주요 민원 업무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특히, 수도요금 분리고지 건수는 2014년 대비 310%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일선 현장에서는 상수도 요금관리시스템 고도화에 따라

1) 이사정산 처리부서 : 120다산콜센터, 사업소 민원처리팀·요금과

사전신고(취득일 10일 전) 없이 이사 당일에도 분리고지 신청으로 정확한 수도요금 정산이 가능한 상황임.



- 따라서 안 제30조제2항과 같이 일선 현장의 업무수행 수준에 상응하지 못하는 수도요금 분리고지 사전신고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현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